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

2011년도 제28차 회의

1. 일 자 2011년 12월 16일 (금)

2.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

3.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(총재)

김대식 위원

최 도 성 위 원

강 명 헌 위 원

이 주 열 위 원 (부총재)

임 승 태 위 원

4. 결석위원 없음

5.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

장 병 화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

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

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

이 용 회 공보실장 성 상 경 의사관리팀장

- 6. 회의경과
- 가. 의결안건

〈의안 제58호 —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」 개정(안)〉

(1) 담당부총재보가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변경(반월→월)으로 지급준비금 적립기간 말일경에 조정해야 할 자금과부족 규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립기간 마지막 영업일의 자금조정예금 및 대출의 이율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

(2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의결사항

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 〈붙임〉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」 개정(안)(생략) (한국은행 홈페이지 '통화정책-금융통화위원회-의결사항' 참조)

〈의안 제59호 — 「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」 개정(안)〉

(1) 담당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추가된 금융채에 대한 지급준비율 부과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최지지급준비금의 계산기간 및 보유기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

(2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의결사항

「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〈붙임〉「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」개정(안)(생략) (한국은행 홈페이지 '통화정책-금융통화위원회-의결사항'참조)

〈의안 제60호 — 「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」 개정(안)〉

(1) 담당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라 「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」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제안설명을 하였음

(2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의결사항

「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〈붙임〉「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」개정(안)(생략)

(한국은행 홈페이지 '통화정책-금융통화위원회-의결사항' 참조)